2021년 『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』 모집 공고

2021년 『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사업화 성공을 희망하는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3월 11일 대구테크노파크워장

1. 지원개요

□ 사업목적

O 유망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

□ 지원규모

- 지원규모 : 10개 프로젝트 내외
- 지원금액 : 프로젝트 당 최대 60백만원
- 기업부담금 : 코로나19 피해기업*은 지원금의 10%이상 현금부담
 - 그 외 기업은 지원금의 20%이상 현금부담
- * 코로나19 피해기업 : '19년 대비 '20년 매출액이 20%이상 감소한 기업(증빙서류 必)
- ※ 지원규모 및 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제외 항목
 - 인건비, 출장비, 식대, 부가세 및 관세, 이체 및 송금수수료 등
 - 사무용품・비품, 장비구입비, 시험평가를 위한 부품・재료 구입비 등
- □ 지원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. 12. 17(금)까지
- □ **지원분야**: (신산업) 미래형 자동차, 물, 의료, 에너지, 로봇, 스마트시티 (전통산업) 기계부품, 섬유, 안경, 뿌리산업 분야

□ 신청자격

-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**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*으로써** 지원을 통해 **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한 지원분야 프로젝트**
 - *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

□ 주요 지원내용

○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필요한 전 분야 패키지 지원

<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(예시) >

세부 지원분야	지원 내용
시제품 제작	기술개발 이후 시금형 제작, 목업 제작 등(양산금형, 장비구입 등 제외)
제품 고급화	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,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
인증	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인증, 신뢰성 평가 등(ISO인증 제외)
국내외 지식재산권	국내외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디자인) 출원 및 등록 지원
기술이전 확산	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법률 지원,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지원
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	공인시험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, 장비활용 지원
설계	판매 제품의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지원 등
국내외 전시회	전시회 부스 임차비, 설치비, 전시물품 운송비(편도) 등
통·번역	전시회참가 및 바이어상담 통역, 홍보물 제작 번역 등
마케팅 머티리얼	제품홍보 자료(브로슈어, 동영상), 온라인 광고, 현수막 등 제작지원
브랜드 개발	브랜드 전략 수립, 브랜드 리뉴얼 등
디자인	제품(부품) 디자인, 포장디자인, 홈페이지 상품페이지 디자인 등
기술사업화 전략수립	국내외 시장조사, 컨설팅, 마케팅 전략수립 등

※ 전시회 지원의 경우, 선정 전 사전 등록된 전시회도 지원가능(단, 지원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)

○ 지원프로그램 예시

- <u>패키지 지원 시 항목 간 연계성 필요</u>(사업화 단계별 연계 패키지 구성) 예) 시제품 제작 + 공인시험평가 + 특허출원 + 마케팅 머티리얼 + 전시회 + 통·번역 → 단. 시제품 미완성인 상태에서 전시회 참가는 불인정
-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
 - 예)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특허출원, 타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는 지원불가 홍보물 제작 시, 해당 프로젝트 내용이 없거나 비중이 적을 경우 지원불가 (기업전체를 홍보하는 브로슈어, 동영상, 모바일페이지, 온라인광고, 현수막 등)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브랜드 개발은 지원불가
- <u>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은 외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만 인정</u> ※ 기업자체 시험분석을 위한 재료 및 장비구입은 불인정
- 단일분야만 지원받아도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다면 단일지원도 가능

□ 지원방식 및 사업비 반납 안내

-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금 100% 선지급
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최종 선정기업 대상, 별도 안내)
- 기업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신규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
 - → 선정기업들의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업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일괄지급 ※ 지급방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중간점검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**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협약해약** 사유 등이 확인된 프로젝트는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프로젝트 중단 및 사업비 환수
 - 사업목표는 반드시 사업기간 내에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
 - 협약(지원)기간 내 진행 및 완료된 사항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예) 출원사실증명원, 인증서, 시험분석보고서 등 협약기간 내 완료된 것만 인정
- 사업비 회계정산 후 통장 해지, 사업비 잔액, 예금이자(해지이자 포함) 반납 → 사업비 잔액, 예금이자 반납 전 사업비 통장 해지불가. **반납 시 통장 해지(필수)**

2. 신청접수 및 문의

- □ 공고기간 : 2021. 3. 11(목) ~ 4. 09(금) (30일간)
- □ 접수기간: 2021. 4. 01(목) ~ 4. 09(금) (7일간)
- ※ 미비서류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접수기한 이후에는 접수 불가
- □ 신청양식 : 온라인 다운로드
 -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ttp.org) > [알림마당] > [사업공고]
 - 대구하나로지원센터(www.hittp.org) > [지원사업] > [기업지원사업공고]
 - 대구창업허브플랫폼(startup.daegu.go.kr) > [지원사업] > [지원사업공고]
- □ 접수방법 : 등기 우편
 - O 신청마감일(4/9(금), 17:00)까지 도착 완료된 건만 접수

□ 접수 및 문의처

접수처	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&BD지원팀		
	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		
문의처	이재환 책임연구원	천보경 연구원	
	053-757-4142	053-757-4151	

□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제출부수	山立
1	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신청양식)	원본 각 1부	
2	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(신청양식)	원본 1부	
3	선정업체 상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(VAT 별도 표기)	사본 각 1부	
4	최근 3년간('18~'20년) 결산재무제표 ※ '20년 미결산 시, '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' 원본 1부 제출 (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가능)	사본 각 1부	필수
5	(공고일('21.3.11) 이후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원본 1부	
6	사업자등록증	사본 1부	
7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민원24(minwon.go.kr)에서 발급가능	원본 각 1부	
8	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인 경우)	사본 1부	해당시
9	우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해당기업에 한함)	사본 각 1부	ᅦᄼᄭ

※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(hwp) 작성본은 이메일(cbk@ttp.org) 별도 제출

3. 평가방법

□ 평가방법(상대평가)

O 1차 서면평가 :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평가

○ 2차 발표평가 :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발표 평가

□ **평가기준**: 사업화 현황(15점), 계획의 적정성(15점), 고용창출 및 사업화기대효과(50점), 성과 및 기여도(20점), 우대가점 등

□ 우대사항(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: 최대 5점)

- **국내복귀 기업**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*)(5점)
 - * 제2조 제4항 : 4. "국내복귀기업"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.
 - 가.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 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
 - 나.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
- **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** 지원과제 중 '보통이상' 판정을 받은 과제(3점)
- **신산업분야**(미래형 자동차, 물, 의료, 에너지, 로봇, 스마트시티)(2점)
- **대구시 고용친화기업** 선정기업(지정취소기업 제외)(2점)
- ※ 상기 우대사항은 1차 서면평가에만 반영되며,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

4.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 대상

- O 대구광역시에 본점만 있거나 사업장만 있는 중소기업
- O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, 이미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
- O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,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(보고서 제출,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 대표가 신용 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500% 이상인 기업
- O 부도,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
- O 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), 금융 및 보험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- O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유의사항

- O 총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(부가세는 별도 기업부담)
- 사업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거나,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프로 젝트는 평가 시 제외 또는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- 사업선정 이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 으로 작성하여 적발될 경우 기 체결된 협약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
- 사업 선정이후, 중도 포기 또는 협약 취소되거나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민·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진행 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 불가함

5. 붙임문서

붙임. 2021년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신청양식

2021. 3. 11.

대구테크노파크원장